

本件報告後各利利時
此山の節

蓮高良

列議長

憲法改正の提議

憲法第九十八條の條に依りて憲法の改正を以てするが爲め

列議長
提議

大統領

李承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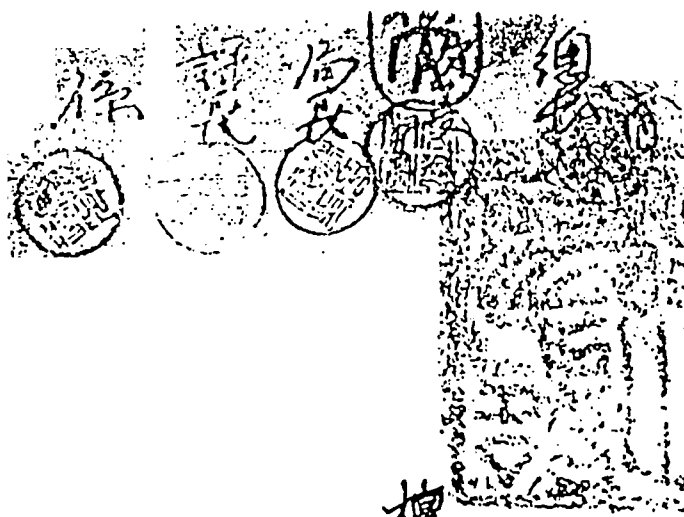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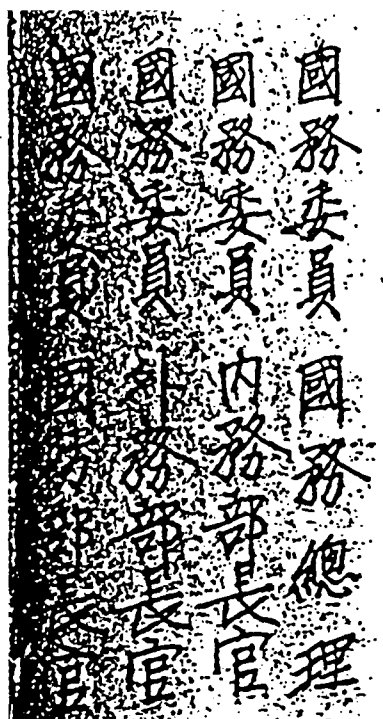
檀紀四三八年一月二十三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國務委員 國務院副院長



行政院院長 申翼熙 貴下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朴思賢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徐相權

國務委員 文教科長官 金汝謙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梁聖奉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安東赫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朴術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純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申誠揆

國務委員 通信部長官 姜仁澤

國務委員

國務委員 朴賢海

憲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五條 礦物其他重要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及經

濟上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의 處分、採取、開發 또는 利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六七條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을 原則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할 수 있다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壹字加

第六八條 國防上 또는 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

로 特別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은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은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六九條 第六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

條의規定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 또는公有로移轉할
때에는第十五條第三項의規定을準用한다

附則

(檀紀四十二年)

月

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改正提議의 條文別說明書

一 第八十五條의 改正

現行規定은 鑛物 其他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모두 國有로 하고, 다만 例外的으로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 期間 二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에 依하여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資源乃 至 自然力을 全部 國有로 하고 私有를 認定치 않으며 그 위에 私營을 例外의 境遇에 局限하는 것이 改正提議理由書에 強調된 私有 尊重의 立場에서 볼 때 果 然 妥當한 것이 아나 문제일 뿐만 아니라 設使 其中 一部를 國有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憲法에 規定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改正案과 같이 前記 資源 與 自然力의 處分 採取 開發 또는 利用에 關한 事項을 法律로써 定하기 함으로써, 으며 그

며의實情이適合하도록融通性있기그所有關係 經營乃至
利用關係를規定하려는것이다

二 第八十七條改正

現行規定第一項은重要한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水道 가스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하
고 다만 例外的으로 公共必要에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
는 그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에依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本
條의 規定의 精神은 公共性을 가진 企業이 있는 國營 또는
公營을 可能한 限 廣範圍로 採擇하고 私營은 公共必要에依한
不得已한 境遇에 最少 限度로 局限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改正案은 私營 企業 振興의 精神에서 이들 公共性
을 가진 企業이 있어서도 私營 企業을 特許할 수 있는 條件은 緩
和하여 可能한 限 내게 이를 特許할 수 있도록 法律로써 이를 規

94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음 現行規定 第二項은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 下에 둔다
고 規定하고 있는바, 國家 統制의 基準을 定하기 爲하여, 改正案
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統制하도록 하였다

三、 第八十八條의 改正

現行規定은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
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
理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本條의
趣旨은 私營企業을 國有化乃至 公有化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管理할 수 있는^다 點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改正案은 私營企業을 尊重한다는 趣旨 下에 重點
을 反對便으로 옮겨 私營企業은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
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別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

有化房至公有化까지나로는 그經營을統制管理할 수 없지 않
으므로 私營企業을 함부로 國有化 公有化乃至統制管理할 수
없다는 點에 重點을 두었다

四 第八十九條의 改正

現行規定은 第八十五條乃至 第八十八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
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第
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且 規定하고 있으나 本改正案에 依하
면, 第八十五條 및 第八十七條의 規定에 依한 特許의 取消, 權利
의 收用, 使用, 制限에 關하여는 全的으로 法律로써 規定할 것이
므로 本條에서 第八十五條, 第八十七條에 關한 것을 削除하
고 第八十六條 및 第八十八條에 關하여서만 規定하였다

憲法改正提議理由書

우리 現行 憲法은 지나친 自由主義 經濟의弊를 矯正하여 모든 國民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確保함과 同時에 均等 生活을 保障한다는 趣旨下에 先進民主諸國의 例에 따라 私有財產權의 制限可能性乃至 義務性을 規定함과 同時에 第六章의 經濟에 關한 規定을 特設하여 第八十四條로 우리나라의 經濟秩序의 原則을 宣明하고 第八十五條로 重要資源과 自然力은 國有로 하기 하였으며 第八十六條로 農民에 對한 農地의 分配를 規定하고 第八十七條로 重要公共企業은 原則적으로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할 것과 對外貿易은 國家統制下에 들것을 規定하였으며 第八十八條로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하든가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것을 規定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우리 憲法은 一面 自由主義 經濟의 長點인 自由와 創意

를尊重하면서도 (第五條 第十五條 第八十四條第二項) 他
面社會主義的均等の原理를實現하기爲한國家의統制 干涉를
規定하고있읍니다만은 重要資源과重要企業에關한限後者에
立脚한國有 國營制度가原則이되어있읍니다 (第八十五條
第八十七條 第八十八條) 그런데憲政五年餘를겪어오는中
우리는이經濟體制가本來의意圖한바目的을達成하기보담도리
어弊害를露呈하고있음을感得한바있읍니다

그原因에는여러가지事由가있을것입니다만은 가장重要한
하나 는우리나라經濟의後進性에있읍니다 卽우리나라는여러
가지特殊事情으로발미암다高度로發達된資本主義의段階를踏
지못하였으므로經濟活動에있어서참다운自由의創意의實重性
을經驗하기못하고 그외에企業特히大企業의有效適切한技術
的運營方法도體得치못하였읍니다

96

그러므로前記한 바와 같은重要資源 또는重要企業에 있어서國有乃至國營을原則으로 하는體制는一面各人の自由와創意에依한私有乃至私營의 길을杜絶시킴으로써利己心이因한資源開發의促進과企業運營의積極性 合理性을喪失시키고, 他面企業運營方法의拙劣로말미암아生産力의增加를弱화시키고있음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諸企業特히國家의統制監督을받는企業은不振一路를가듬하고, 도리어憲法의本來意圖와는反對로私營企業을爲主로하는現象을나타내게되어,憲法第六章의規定은第八十六條를除外하고는^{現實上}가이空文化하여가고있음니다.

그러므로本改正案은第八十四條를그대로存置하여社會正義의實現과均衡있는國民經濟의發達을圖謀하는同時에經濟活氣에있어서國民各自의自由와創意를一層더尊重、昂揚시킴으로

趣旨

서生産力의高度增強과國家經濟의發展을期하려는
重要資源 및 自然力의開發과公共企業에 있어서의私有序至私營
의比重을現行憲法의 그것보다相對的으로더무겁게하고그위에
私營企業의國公有化乃至그에對한國家의統制管理를最少
限으로制限하려는것이며이를러우려나리現實에適合하도록
關係條文을改正하려는것입니다

7

廢
12

元
世
亦

